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1. 10 선고 2021가단5000 판결 [사해행위취소 등]

전 문

원 고 A 유한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래

담당변호사 김재인, 정우일, 박은태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이경령

피 고 1. B

2. C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지은

피고들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이가형, 구자인, 여정인

변 론 종 결 2022. 11. 15.

판 결 선 고 2023. 1. 10.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피고들과 D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9분의 2 지분에 관하여 2021. 3. 26. 체결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한다. D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피고 B는 90분의 3 지분에 관하여, 피고 C는 90분의 17 지분에 관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등기국 2021. 3. 30. 접수 제65666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7.경 D를 상대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차전15993호로 양수금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위 법원은 2017. 4. 6. 원고의 신청을 받아들여 D에 대하여 원고에게 6,202,065원과 이에 대하여 2003. 10. 25.부터 2007. 6. 20.까지는 연 17%, 그다음 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2015. 10. 1.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고, 독촉절차비용 47,100원은 D가 부담한다는 지급명령 결정(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하였다. 이 사건 지급명령은 2017. 6. 24. D에게 공시송달의 방법에 따라 송달되어 2017. 7. 8. 확정되었다.

나. D의 부 E(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20. 11. 8. 사망하였다. 당시 망인의 상속인으로는 배우자인 피고 B, 자녀들인 D, F, 피고 C가 있었다. 망인의 공동상속인들은 2021. 3. 26.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피고 B가 40/100 지분, 피고 C가 60/100 지분 비율로 공유하기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약(이하 ‘이 사건 협의’라고 한다)를 하였다. 이에 따라 서울북부지방법원 등기국 2021. 3. 30. 접수 제65666호로 이 사건 부동산 중 40/100 지분에 관하여 피고 B 앞으로, 60/100 지분에 관하여 피고 C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이 사건 협의 당시 D는 채무초과 상태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민사소송법 제150조 제1항에 따른 자백간주 사실 포함),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초한 원고의 D에 대한 채권은 채권자취소권 행사를 위한 피보전채권(이하 ‘이 사건 피보전채권’이라 한다)이 된다. 또한 이 사건 협의 중 D 상속분인 2/9 지분에 관한 부분은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 D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행위로서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그리고 수익자인 피고들의 악의는 추정된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협의 중 이 사건 부동산의 2/9 지분에 관한 부분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 D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피고 B는 3/90 지분에 관하여, 피고 C는 17/90 지분에 관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등기국 2021. 3. 30. 접수 제65666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들은 이 사건 협의 당시 그것이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가 된다는 점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을 제1 내지 21, 24, 26호증의 각 기재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협의 당시 피고들이 그로 인하여 D의 채권자를 해할 것을 알고 이 사건 협의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들의 주장은 이유 있고, 피고들이 악의의 수익자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결국 이유 없다.

1) 이 사건 피보전채권의 정확한 발생일자를 알 수 있는 자료는 없으나 이 사건 지급명령의 지연손해금 기산일이 2003. 10. 25.이므로 그 전에 즉, 이 사건 협의로부터 약 18년 전에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지급명령과 그 기초가 된 서울북부지방법원 2007가소104455 양수금 사건은 모두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진행된 점, 이 사건 피보전채권의 원금액이 6,202,065원인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협의 당시 채무자 D도 이 사건 피보전채권의 존재를 인지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2) 피고 B는 1968. 10. 23. 망인과 혼인신고를 마친 이후 망인이 사망한 2020. 11. 8.까지 52년이 넘는 기간 혼인관계를 유지하면서 부부공동재산의 형성에 기여하였으므로, 망인이 1988. 8. 19. 취득한 이 사건 부동산이 비록 망인 단독 소유 명의로 등기되어 있었으나 그 실질은 부부공동재산으로서 피고 B의 몫이 상당한 정도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망인과 피고 B의 차남인 피고 C는 오래 전에 집을 떠난 장남 D를 대신하여 부모를 부양하면서 망인의 질병 치료에 헌신하는 등 망인과 피고 B의 재산 유지에 크게 공헌하였다.

4) 망인의 공동상속인들은 이상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D와 F을 제외하고 피고들이 이 사건 부동산을 공유하는 내용으로 이 사건 협의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만일 피고들을 포함한 망인의 공동상속인들이 이 사건 협의 당시 D가 채무초과 상태에 있거나 이 사건 협의로 인하여 채무초과 상태가 초래된다는 것을 알았다면 D로 하여금 상속포기를 하도록 하면 되는 것이고, 그와 같은 방법을 사용하면 안 될 별다른 사정이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한다.

판사 이재은

별지